

대법원 2020. 4. 29 선고 2019다301609 판결 [계약금반환청구의소]

---

### 재판경과

대법원 2020. 4. 29 선고 2019다301609 판결

의정부지방법원 2019. 11. 12 선고 2018나211373 판결

### 전 문

**원고, 피상고인A**

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구

**피고, 상고인주식회사 B**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현

담당변호사 김동철, 강신묵, 강찬우, 이준규, 박창익

**판결 선고**2020. 4. 29.

**원심판결**의정부지방법원 2019. 11. 12. 선고 2018나211373 판결

### 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## 이 유

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이므로 같은 법 제3조에서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.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.

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**재판장대법관민유숙**

**대법관김재형**

**대법관이동원**

**주심대법관노태악**